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 제54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8
나. 회부일자 : 1999. 6. 2
다. 상정·의결일자 1999. 6. 23
 1999. 6. 28

고성군수
총무위원회 상정·계류
총무위원회 수정안 상정·의결

2. 제정사유

- 0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0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 (안 제3조)
0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배치 (안 제4조)
0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(안 제5조)
0 65세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입소비용 감면 (안 제6조)
0 노인요양시설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(안 제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, 요양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고성읍 대독리 3-1번지 상에 설치된 노인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0 군비부담으로 인한 군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재정투자에 따른 향후 자금운용 방안,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및 관리자 배치관계, 국·도비지원 규모, 군내 및 여타시군 입소 예상인원, 입소 실비부담, 민간위탁제도 방안, 시설 운영·감독 등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

0 수정동의 : 붙임 수정안 참조

7. 심사결과

0 1999. 6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